

보건의료인력지원법

10월 24일 드디어 시행!

인력확충을 위한 보건의료노조 8년 투쟁의 결실 제대로 된 법 시행을 위해 보건의료인력원 설치가 핵심

10월 24일, 드디어 ‘보건의료인력지원법’ (이하 ‘인력법’)이 시행된다. 2012년 보건의료노조의 제안으로 처음 발의된 인력법은 8년만인 올 4월 5일 국회에서 통과됐다. 이후 6개월간의 하위법령 마련 등 준비를 끝내고 이제 시작점에 섰다.

인력법은 3교대와 밤근무 등 열악한 근무환경과 턱없이 부족한 인력여건 속에서 힘들어하던 80만 보건의료노동자들의 처지

를 개선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무기이자, 노동존중과 환자안전을 모두 실현시킬 수 있는 정의로운 법이다. 인력법을 통해 우리가 직접 보건의료인력정책의 주요한 과제들을 선정하고, 이를 여러 전문가, 직종협회 등 직영단체들과 협의하고 논의하여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. 전문가들과 함께 종합계획 수립과 그 집행을 총괄하는 보건의료인력원을 공

동으로 운영한다. 보건의료노조는 인력법의 올바른 시행을 위해 보건의료인력 전담 기구인 보건의료인력원 설치를 핵심과제로 보고 있다. 따라서 지난 10월 8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제대로 된 보건의료인력원 설치를 위한 투쟁을 결의했으며 앞으로 관련 활동을 펼쳐나갈 예정이다.

■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시행되면 변하는 것들

✓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

보건의료인력지원법은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의무화되고 종합적인 계획 수립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이다. 이 법의 시행을 통해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국가의 책무가 확인된 것이다.

이 법에 따라 당장 내년까지 정부는 1기 보건의료인력종합계획(2020-2024)을 수립하여야 한다. 종합계획에는 법 제5조 ②에 명시해 둔 것처럼 ▲ 보건의료인력에 관한 정책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에서부터 ▲ 보건의료환경 변화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수요 추계, ▲ 양성 및 공급, ▲ 면허·자격관리 및 교육·연수에 관한 사항 뿐만 아니라, ▲ 보건의료인력 및 보건의료기관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이나 ▲ 지역별, 보건의료기관 유형별 보건의료인력의 적정 배치에 관한 사항 ▲ 의료취약지 및 공공의료분야의 보건의료인력 양성 및 배치에 관한 사항에 이르기까지 보건의료기관의 원활한 인력 확보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모든 사항에 대해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책무를 가지게 되었다.

✓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인권 침해 예방 및 방지를 위한 지원

○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은 보건의료인력의 인권문제에 대한 상담에서부터 예방을 위한 노력에 이르기까지 보건의료인력 앞에 나서는 여러 인권적 문제들을 개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두고 있다. 늦었지만 오늘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의 제정으로 만성적이고 고질적인 인력 부족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장시간노동, 열악한 근무조건 개선을 위한 지원근거가 마련되어, 이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한 것이다.



노동조합 11월 행사가 미쳤다!



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고생했던 일 힘들었던 일 털어버리고 즐거운 날 되어요!

안암 : 11월 5일(화) - 편비어킹 참살이길 짱오락실 옆 2층

구로 : 11월 7일(목) - 핫썬치킨 구로역점 5층

안산 : 11월 8일(금) - 편비어킹 중앙역점



일시 : 11월 13일(수) - 15일(금) 보건의료노조 1층 희망테(영등포 버드나루로)

신청 : 간호부 리퀘스트 / 부서장 신청 / 노조사무실 직접 신청

** 유급 공가입니다! 꼭 신청하시고 교육 받고 힐링하세요~

<특강> 13일 : 임승수 작가(원숭이도 이해하는 자본론 저자)

14일~15일 : 이문호 박사(워크인 조직혁신연구소장, 고대의료원 노사문화개선 공동연구 참여진)

캠핑대회 다녀왔어요 ♡ 일시장소 : 11월 2일(토) - 3일(일) 속리산 렛츠고 코오롱 캠핑장



11월 9일 가자, 서울로! 10만 전국노동자 대회로!

정부는 ILO(국제노동기구) 협약 비준 과정에서 노동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내용을 끼워 넣었습니다.

■ 전임자 상급단체 활동 금지 ■ 상급단체 간부 사업장 내 출입 시 사용자 허가제 도입 ■ 원내 집회 금지 ■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(3년) 등으로 노동조합의 활동을 원천 봉쇄하고 노동조합을 말살하려는 개악안을 발의한 것입니다. 노동법 개악으로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것은 바로 우리들입니다.

일시 및 장소 : 11월 9일 오후 3시 여의도